

경운대학교 항공안전정책관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운대학교 항공안전정책관(이하 “안전 부서”라 한다)의 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1.10.01.>

제2조(정의) 이 규정과 안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고경영관리자”는 서비스 실시 여부, 재정적 및 인적 자원 활용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안전 성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총괄 안전관리자”는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한 권한이 부여되고, 관련 업무의 역량·경험·지식을 갖춘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위치) 안전 부서는 관련된 시설 또는 기관에 조직을 둘 수 있으며 위치는 다음 호와 같다.

1. 안전 부서는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730 경운대학교에 둔다.
2. 필요 업무는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읍성로 5 경운대학교 플라잉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본 규정은 안전 부서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5조(조직) ① 안전 부서에는 총괄 안전관리자를 두고, 총괄 안전관리자는 전임교원으로서 전문 교육기관 5년 이상 또는 항공 관련 자격증의 최상위 자격으로 해당 경력 10년 이상의 항공 전문지식을 갖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안전 부서는 총괄 안전관리자 1인으로 구성된 총괄조직으로 둔다.

③ 안전 부서는 관련된 부서의 특정 직원을 지정하여 해당 안전 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6조(기능) 안전 부서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최고경영관리자
 - 가. 항공기 운항·교육·사업 등의 서비스 실시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 나. 항공기 운항·교육·사업 등의 서비스 관련 재정적·인적 자원 활용에 관한 최종 결정
- 다. 안전 정책에 관한 사항 수립
- 라. 안전 목표에 관한 사항 수립

2. 총괄 안전관리자

- 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의 관리
- 나.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평가 및 위험도 경감 등에 관한 업무
- 다. 위험도 경감조치의 유효성 확인
- 라. 최고경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에 대한 주기적 보고
- 마.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문서·기록의 유지
- 바.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훈련, 관련 규정·기준 등의 충족여부 확인
- 사. 최고경영관리자에게 안전에 관한 독립적 조언
- 아. 국내외에 잠재된 안전문제 모니터링 관련 영향력 검토
- 자.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등과의 협의 총괄

제3장 안전 협의회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안전 부서는 안전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안전 협의회 위원장은 최고경영관리자로 하고, 위원은 총괄 안전관리자, 비행교육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논의 사항에 따라 관련 부서의 내부 안전담당을 총괄 안전관리자가 추가할 수 있다.

③ 안전 협의회는 년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 총괄 안전관리자가 요청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안전 협의회 임무) 안전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자원의 배분
2. 안전 성과의 확인
3. 안전 전략에 대한 기본방향
4.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현황

제4장 안전 실행그룹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안전 부서는 국토교통부훈령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 실행그룹을 둘 수 있다.

② 안전 실행그룹의 구성원은 총괄 안전관리자와 안전 관련 교직원, 타 부서별 관리자로 하며, 그 밖에 총괄 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지정하는 자를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안전 실행그룹 임무) 안전 실행그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위험도 관리에 관한 업무
2. 가용한 안전데이터의 발굴, 유효성 있는 위험도 경감 전략의 시행, 조직 구성원에 대한 피드백 실시여부의 확인
3. 변화관리의 일환으로 운영상의 변경이나 신기술 도입과 관련 안전위험도 평가
4. 위험도경감의 시의적절한 조치를 위한 관계부서 간 협조·조정
5. 특정 위험도경감 조치의 유효성 검토

부 칙<2021.06.21.>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규정 이외의 안전 부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등의 별도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2021.10.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